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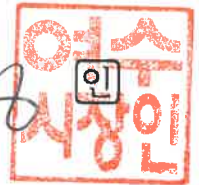


제246회 여수시의회 정례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5년 6 월 30 일

여 수 시 장 



여수시 조례 제2213호

붙임 여수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부

여수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여수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1호부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주변지역 주민의 소득증대 사업
2. 주변지역 주민의 생활편익 등 복지증진 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세부지원 대상사업은 별표 1과 같다.

제9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관외자(사망일 현재 전라남도 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망한 사람과 그 외 타지역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중 관내에서 사망한 사람을 말한다) 다만, 공설화장시설 사용에 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별표 1”을 “별표 2”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별표 2”를 “별표 3”으로 한다.

제12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17조제3항 중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5조제1항”을 “「공유

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5조제1항”으로 한다.

제27조제1항 중 “제32조제1항·제21항”을 “제32조제1항·제2항”으로 한다.

제29조제2호 중 “별표 3”을 “별표 4”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를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로 한다.

제34조제1항제2호 중 “별표 3”을 “별표 4”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를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로 한다.

제36조를 삭제한다.

별표 1, 별표 2 및 별표 3을 각각 별표 2, 별표 3 및 별표 4로 하고,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장사시설 주변마을 지원사업의 종류(제3조의2제2항 관련)

구분	지 원 사 업
1. 소득증대 사업	○ 농림업·축산업 시설의 설치
	○ 상·공업시설의 설치
2. 복지증진 사업	○ 사회복지시설 관련사업
	○ 도로시설 관련사업
	○ 상·하수도시설 관련사업
	○ 교육·문화시설 관련사업
	○ 운동·오락시설 관련사업
3. 그 밖의 사업	○ 주거 및 생활환경 개선사업 등 - 단, 주민복지증진을 위한 지역화폐 지원은 지원액의 30% 이내 ○ 소득증대·복지증진·육영사업 등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상하수도 사용료·전기료·주민건강진단비 등 주민지원사업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의2(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시장은 공설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의 복지향상 및 주거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생활개선사업비</u> 2. <u>주민숙원사업비</u> 3. <u>급수시설 유지 관리비</u> 4. <u>위생해충 방역 유류비</u> <p>제9조(사용자격) ① 공설장사시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신이나 유골을 매장· 화장 또는 봉안하고자 하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 4. (생 략) 5. <u>관외자(관내에서 사망한 사람 중 사망 당시 관외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던 사망자를</u> 	<p>제3조의2(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① ----- ----- -----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주변지역 주민의 소득증대 사업</u> 2. <u>주변지역 주민의 생활편익 등 복지증진 사업</u> 3. <u>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u> <p>② <u>제1항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세부지원 대상사업은 별표 1과 같다.</u></p> <p>제9조(사용자격) ① ----- ----- -----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 4. (현행과 같음) 5. <u>관외자(사망일 현재 전라남도 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망한 사람과 그 외 타지역에</u>

말한다). 다만, 공설화장시설 사용에 한정한다.

② (생략)

제10조(사용료 등) ① 공설장사시설의 사용료 및 관리비(이하 “사용료 등” 이라는)는 별표 1 과 같다.

② (생략)

③ 제2항에 따른 사용료 등을 납부하였으나 사용 전 시설의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등의 전액을 환불하고, 시설의 사용 이후 취소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사용료 등을 반환한다.

제12조(금지행위) ① (생략)

제17조(수탁자의 의무 및 위탁의 해지) ①·② (생략)

③ 제1항 및 제2항의 의무 및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못하거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 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주민등록을 둔 사람 중 관내에서 사망한 사람을 말한다) 다만, 공설화장시설 사용에 한정한다.

② (현행과 같음)

제10조(사용료 등) ① 공설장사시설의 사용료 및 관리비(이하 “사용료 등” 이라는)는 별표 2 과 같다.

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 따른 사용료 등을 납부하였으나 사용 전 시설의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등의 전액을 환불하고, 시설의 사용 이후 취소하는 경우에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사용료 등을 반환한다.

제12조(금지행위) (현행 제1항과 같음)

제17조(수탁자의 의무 및 위탁의 해지)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 25조
제1항 -----

위탁에 대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그 동안의 투자비는 시에 귀속된다.

④ (생략)

제27조(개장명령 등) ① 시장은 제8조제3항에 따라 사용이 취소되었거나 제21조제1항·제2항 및 제32조제1항·제2항에 따라 사용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30일의 기간을 주어 유골 또는 분묘를 수거하거나 개장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29조(사용료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화장시설 사용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

1. (생략)

2.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 및 그 배우자로 별표 3에 해당하는 사람과 그 배우자

3. ~ 5. (생략)

6.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의사상자, 「상훈법」에 따른

-----.

④ (현행과 같음)

제27조(개장명령 등) ① -----

-----제32조제1항·제2항-----

-----.

② (현행과 같음)

제29조(사용료 감면) -----

-----.

1. ~ 5. (현행과 같음)

2.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 및 그 배우자로 별표 4에 해당하는 사람과 그 배우자

3. ~ 5. (현행과 같음)

6.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사람,
여수시민의 상 수상자 및 이
에 준하는 사람 중 국가 또는
시 발전에 공로가 있다고 인
정되는 사람

7. ~ 9. (생략)

제34조(사용료 감면) ① 시장은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사람이 사망하여 공설봉안시
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1. ~ 4. (생략)

5.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
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의사상자, 「상훈법」에 따른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사람,
여수시민의 상 수상자 및 이
에 준하는 사람 중 국가 또는
시 발전에 공로가 있다고 인
정되는 사람 [본호 신설 2016.
4. 22.]

6. · 7. (생략)

② (생략)

제3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
으로 정한다.

7. ~ 9. (현행과 같음)

제34조(사용료 감면) ① -----

-----.

1. ~ 4. (현행과 같음)

5.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
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6. · 7.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삭제>